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5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4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경훈, 김길영,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
김원중, 김종길, 김지향,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문성호,
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
박영한, 박춘선, 서호연,
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
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이경숙,
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
이성배, 임춘대, 장태용,
채수지, 최민규, 허 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41
명)

1. 제안이유

- 「도로법」(상위법)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구간에 배수성·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도록 개정(2024.1.9.)됨에 따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리자가 도로의 보수·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배수성·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5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로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관리자는 도로의 보수·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「도로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·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 ① (생략)	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관리자는 도로의 보수·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「도로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·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[참고] 2024년도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15조	도로포장 품질향상	87,570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

추 계 분 석 관 김 지 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[붙임 1] 2024년 도로포장 품질향상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 1월 ~ 2024. 12월
- 사업대상 : 서울특별시 전역
- 사업수행주체 : 자체
- 사업의 주요내용 :
 - 도로포장 상태 조사 장비 운영(포장 노면, 하부지지력, 도로 공동 조사 장비)
 - 도로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기술교육 시행